

한중 양국 교민 정책의 법률 적용 대상과 그 함의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의 「재외동포기본법」과 중국의 「귀교교권권익보호법(歸僑僑眷權益保護法)」을 중심으로

최승현(전남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장윤재(전남대학교 디아스포라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논문요약

한국의 「재외동포기본법」에 명시된 “재외동포”라는 이름에는 혈통에 근거하여 해외의 모든 한민족을 아우르겠다는 명명 주체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재외동포”라 호명된 이들이 과연 조국의 희망에 호응할 것인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재외동포”를 둘러싼 법적 정의나 범주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한국 교민 정책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물론 중국 교민 정책의 대상인 “화교화인”이라는 이름에도 한국과 유사한 명명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한국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중국 교민 정책의 대표 법률인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의 법률 적용 대상은 “화교화인”이 아닌 중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중국 내의 “귀교·교권”이다. 여기에는 “화교화인”을 둘러싼 외교적 문제의 소지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비교해 볼 때, 「귀교교권권익보호법」에 근거한 중국의 교민 정책은 이중적이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책과 법률을 이원화하는 중국 정부의 교민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참고의 가치가 있다.

주제어: 교민정책, 재외동포, 재외동포기본법, 화교화인, 귀교교권권익보호법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의 「재외동포기본법」과 중국의 「귀교교권권익보호법(歸僑僑眷權益保護法)」이 각기 명시하고 있는 법률 적용 대상과 그 함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참고의 의의를 추출하겠다는 목적을 갖는다.

일견하기에 “재외동포”¹⁾를 법률 적용 대상으로 삼는 한국의 「재외동포기본법」을 이른바 “귀교(歸僑: 중국으로 귀환, 정착한 화교)와 “교권(僑眷: 화교의 중국 내 친척)”²⁾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귀교교권권익보호법」과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한중 양국의 교민 정책을 논함에 있어 한국의 “재외동포”와 동등한 층위에 있는 중국 측의 대상은 “화교화인(華僑華人)”³⁾인바, 한국의 「재외동포기본법」과 비교가 가능한 중국의 법률은 응당 “화교화인” 관련 법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재 중국에는 “화교화인” 관련 법률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의 그 어떤 법률도 이들에 대한 사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교무(僑務)”라 일컫는 중국 정부의 “화교화인”에 대한 정책이나 학계의 관련 연구는 하나같이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을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이 중국의 “화교화인 정책”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법적 권위를 설명하는 것으로써, 그 지위와 기능이 한국의 「재외동포기본법」과 동일선상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재외동포기본법」(제정: 2023.05.09.) 및 이의 하부 규정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공포: 2023.11.07.)은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대표 법률이다.

-
- 1)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08만 명(7,081,510명, 2022.12월 말 기준)으로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4,613,541명, 재외국민 2,467,969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거주 국가로는 미국, 중국, 일본의 순으로 각기 36.93%, 29.79%, 11.33%를 차지한다. 재외동포청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101(검색일: 2025.08.10.).
 - 2) “귀교·교권”의 인구는 약 3,0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귀교”는 77.7만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中华全国归国华侨联合会<http://www.chinaql.org/n1/2018/0802/c420286-30203741.html>(검색일: 2025.08.10.).
 - 3) 해외 “화교화인”의 수는 약 6,000만 명을 넘어서 있고, 전 세계 200여 개국과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国务院侨务办公室<https://www.gqb.gov.cn/news/2023/0606/57210.shtml>(검색일: 2025.08.10.) “화교화인”은 동남아시아에 73.5%, 북미에 12%, 유럽에 5%에 분포한다. 庄国土, “世界华侨华人数量和分布的历史变化.” 『世界歷史』第5期, 2011. p. 14.

「재외동포기본법」의 성격은 2023년 전까지 “재외동포법”이란 약칭으로 불리며 “재외동포 정책”의 법적 근거로 작동해 왔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정: 1999.09.02.)과의 비교를 통해 두드러진다. 후자의 법률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목적에 따라 “재외동포”의 출입국 사안에 집중하면서, 법률의 적용 대상인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와 함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관련 업무를 주로 규정하였다. 이에 비해 2023년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은 뚜렷하게 정책 법률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법률은 제1조에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이어 “재외동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정책의 추진 및 평가 방법 그리고 관련 조직의 설립 등을 규정하였다.

중국의 「귀교교권권익보호법」(제정: 1990.09.07, 개정: 2000.10.31.) 및 그 시행령인 「귀교교권권익보호법 실시판법(實施辦法)」(제정: 1993.07.19, 개정: 2004.06.04.)은 “귀교와 교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목적 아래, 이들이 갖는 각종 권리 및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 정책 추진 부서의 확정, 권익 침해 사안의 발생 시 처분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령은 1990년 제정되어 2000년 한 차례의 보완을 거치면서 줄곧 중국 “화교화인 정책”의 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교민 정책은 교민의 현지화를 지원하면서도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모순적 논리의 정책 방향, 국가이익과 교민이익을 결합한다는 정책 목표, 그리고 각 교민이 거주하는 국가와의 외교 문제를 둘러싼 정책 변수를 공유한다. 이 가운데 각 교민이 거주하는 현지 국가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외교적 변수는 종종 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해당 정책 방향과 목표에마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외교적 변수에 대한 고려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개정되었던 이유, 1990년대부터 학계가 줄곧 한국 “재외동포 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했던 여러 문제, 즉 국가정책으로서의 장기적 전략 부재, 추진체계의 불완전성에 따른 부처 간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 정부 주도로 말미암은 “재외동포”의 피동성 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2023년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의 핵심인 “재외동포”의 정의 및 범주가 여전히 기타 관련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중국의 교민, 즉 “화교화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국 교민 정책에 대한 외교적 변수의 압력은 한국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한다. 1949년 사회주의 중국의 건국에서부터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직전까지 동남아의 거의 모든 국가는 “화교화인”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불화하였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이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외교단절이나 전쟁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이 지적받고 있는 여러 문제가 중국의 “화교화인 정책”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은 사뭇 이채롭다. 특히 중국의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은 제정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한 차례 조항 추가의 개정만 있었을 뿐 그 체계성과 일관성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화교화인 정책”의 대표 법령이라는 지위 또한 견고하다는 것은 충분히 학문적 주의를 끌 만하다.

모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화교화인”의 참여를 중국 교민 정책의 평가 지표로 삼는다면, 1980년대 이래 40여 년간 중국에 유치된 외자 가운데 60% 이상이 “화교화인”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는 분명 중국 교민 정책의 성과를 보여준다.⁴⁾ 이에 일부 연구자는 “재외동포 정책”을 위한 정책 제언의 차원에서 중국의 “화교화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다. 예로 이종철의 「재외동포정책 비교연구-각국 사례를 중심으로」는 한국이 참고해야 할 성공적인 교민 정책으로서 중국의 사례를 소개하였고,⁵⁾ 최영의 『한국과 중국의 재외동포정책 비교연구』, 홍화의 『한국의 재외동포정책과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의 비교연구』, 김진영의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과 중국의 화교 정책 비교연구』 등 학위 논문은 중국의 “화교화인 정책”을 한국의 관련 정책 영역이 학습해야 할 직접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⁶⁾ “재외동포법개정추진위원회”의 『재외동

4) 嚴瑜, “僑這四十年, 與國共奮進(僑界關注).” 『人民日報(海外版)』2018.12.14, “화교화인 정책”에 대한 중국 측의 공식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했다. “獨特機遇論在新時期中國僑務發展戰略中繼承與發揚(2015.03.19).” 國務院僑務辦公室 <https://www.gqb.gov.cn/news/2015/0319/35336.shtml>(검색일: 2025.06.10).

5) 이종철, “재외동포정책 비교연구-각국 사례를 중심으로”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재외동포 패넬)』,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8.08).

6) 최영, “한국과 중국의 재외동포정책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세계한민족네트워크협동과정 박사학

포법 개정을 위해』는 중국의 해외 이주자를 모두 “화교”라 통칭하면서, 중국 정부가 관련 법률 및 조식을 통해 이들의 권익을 공식적으로 보장하면서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재외동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⁷⁾

이들 연구는 공통의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바로 중국의 적극적인 “화교화인 정책”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였던 바,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중국 “화교화인 정책”의 결과에 집중할 뿐, 정작 그 결과를 만들어 낸 중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한국의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논리적으로 볼 때, 중국에 “화교화인”에 관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찌 그 “화교화인 정책”을 적극적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정책 대상에 통일적인 명칭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해당 정책의 목표 달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교민 정책은 오히려 중국의 그것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현재 한국 교민 정책의 공식 명칭은 “재외동포 정책”이다. 해당 정책의 최고 심의 기구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 1997년 법인의 형식으로 조직된 “재외동포재단” 및 이를 대신해 2023년 정부 조직으로서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의 민원 해결을 위해 외교부가 운영하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 그리고 해당 정책의 대표 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재외동포”가 해당 정책의 적용 대상임을 뚜렷하고 드러내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교민 정책에는 한국과 같은 정책 대상의 통일성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 교민 정책의 최고 심의 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화교위원회”이고, 책임부서는 “국무원 교무판공실(國務院 僑務辦公室)”이며, 대의기구는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中華全國歸國華僑聯合會)”이고, 대표 법령은 「

위 논문, 2011; 홍화, “한국의 재외동포정책과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의 비교연구.” 인천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김진영,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과 중국의 화교 정책 비교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인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7) 재외동포법개정추진위원회,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해』, 서울: 대원문화사, 2002, pp. 70~73, 334~335.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의 법률 적용 대상은 “화교화인”이 아닌 “귀교·교권”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을 대표 법률로 삼아 적극적인 “화교화인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화교화인”이 없는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이 어떻게 “화교화인 정책”의 대표 법률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한중 양국의 교민 정책에 관한 대표 법률의 비교는 학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양국 교민 정책의 역사, 배경,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은 생략하고,⁸⁾ 두 법률에 드러난 정책 대상의 명칭과 그 함의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다. 이 작업은 중국 “화교화인 정책”에 대한 핵심적 이해와 함께 한국 “재외동포 정책”이 참고할 만한 또 다른 형태의 교민 정책 메커니즘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II. 「재외동포기본법」의 “재외동포”

「재외동포기본법(안)」은 국회에서 1997년 발의된 이후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꾸준히 논의되다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양당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결국 2023년 3월 재외동포청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동년 5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1조에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 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우선 밝혔다. 제2조는 “재외동포”에 대해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8) 한중 양국의 교민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기를 권한다. 최승현, “화교화인정책의 전략적 이원성.” 『중국학논총』 제36권, 2012; 서정경, “국가주의와 디아스포라: 중국의 대외 인식과 대응에 따른 화교화인정책.” 『국제정치논총』 제57집 4호, 2017; 이진영,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Working Paper』, 2010.11; 김용찬, “재외동포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민족연구』 제72호, 2018.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이어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재외동포의 권익과 지위의 향상,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유대강화,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 등에 관한 정책”이라 각기 정의하였다. 그리고 제3조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4조는 국가의 책무를, 제7조와 제8조는 재외동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를, 그리고 제10조부터는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과 각 조직의 역할, 그리고 세계 한인의 날 지정 등을 명시했다.⁹⁾

이승우는 「재외동포기본법」을 통해 각종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생활 안정, 그리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통일되게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¹⁰⁾ 하지만 법률 형식의 차원에서 볼 때 「재외동포기본법」은 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의무 조항보다는 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조항을 무려 8회에 걸쳐 나열하고 있어, 법의 본질적 속성인 규범성과 강제성보다는 두루뭉술한 모호성과 이에 수반되는 법 적용의 편의성을 드러내고 있다.

「재외동포기본법」에 나타나는 모호성과 편의성은 해당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던 1990년대 말부터 학계가 줄곧 제기하였던 “재외동포”의 정의 및 범주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2002년과 2010년의 이진영의 연구, 2004년 “지구촌동포청년연대”가 편찬한 연구자료집 등은 “재외동포 정책”의 대표적 쟁점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의 및 그 개념 문제 등을 꼬집었는데,¹¹⁾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최근의 연구에서도 이는 여전히 문제로써 지적되고 있다.¹²⁾

한국 교민 정책 및 관련 법률은 “재외동포”란 명칭을 통해 여러 국적을

9) “재외동포기본법(2023.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0669#0000>(검색일: 2025.06.10).

10) 이승우, “재외동포청의 사무와 직제 편성 및 관련 법령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66호, 2024, p. 26.

11) 이진영,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4호, 2002, pp. 151~152; 이진영,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p. 3;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자료집』, 서울, 2004.08, p. 216.

12) 전호성 외, “재외동포 범주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와 문제점 고찰.” 『재외한인연구』 제66호, 2024, pp. 42~45.

가진 해외 한민족 동포를 하나의 통일된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관련 집단의 이익 혹은 외교적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었고, 이에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 정의 및 범주는 정치 혹은 외교적 필요에 따라 수정과 보완을 반복하였다. 예로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를 “재외동포”라 정의했지만,¹³⁾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국민을 한국의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¹⁴⁾ 이에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정의했다.¹⁵⁾ 2000년 전후 200만 인구에 육박했던 중국의 “조선족”이나 CIS 지역의 50만 “고려인” 절대다수는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였던 바, 전자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분명하지만, 후자에 따르면 그들은 “재외동포”가 아니었다. 결국 이는 국내에 체류 중이던 “조선족”과 “고려인”의 조직적 반발과 함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으로 이어졌다.¹⁶⁾

2004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위 문제를 해결코자 했다.¹⁷⁾ 하지만 이는 다시 2023년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의 관련 정의와 일부 충돌했다. 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4)」은 “재외동포”의 범주에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였지

13) “재외동포재단법(1997.03.2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36180&ancYd=19970327&ancNo=05313&efYd=199704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검색일: 2025.06.10).

14) 이용재,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과정과 과제.” 『동아시아의 재외동포정책』 제61호, 2015, p. 9.

1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09.0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7496&ancYd=19990902&ancNo=06015&efYd=1999120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검색일: 2025.06.10).

1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2001.11.29).”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537&mode=2>(검색일: 2025.06.10).

1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4.03.0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4154&ancYd=20040305&ancNo=07173&efYd=200403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검색일: 2025.06.10).

만, 「재외동포기본법」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란 표현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뿐 아니라 관련 무국적자를 그 범주에 포괄하였다. 결국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재일교포” 가운데 역사 속의 조국인 “조선”을 선택한 “조선적(朝鮮籍)” 동포, 그리고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CIS 지역에 거주 하면서 국적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무국적자로 전락한 “고려인”은 “재외동포”였지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들은 “재외동포”가 아니었다.

기존의 연구는 위 문제가 “재외동포”에 대한 편의적 정의와 범주의 설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본 연구는 “재외동포”라는 명칭과 함께 그 명칭의 적용 범위에 주목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재외동포”를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한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 이른바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국의 세계화 전략과 장기적 국가 발전을 위해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법률로써 이 “재외동포 정책”을 명시하고, 여기에 각각의 특성을 가진 “재외동포”를 일률적으로,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까지도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아래의 두 가지 현실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는 외교적 문제와 이에 따른 “재외동포”의 생존권 문제이다. 예로 「재외동포기본법」의 제14조(실태조사)는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사회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재외동포청이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면, 이는 관련 국가의 시각에서 볼 때 자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간섭으로 이해될 소지가 충분하다. 반대로 “재외동포”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이 외국 정부의 반발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 유기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해외에 뿌리를 내린 “재외동포”의 삶에 대해, 더군다나 한국이 아닌 거주국의 행정적, 법률적, 정치적 영역에서 살아가야 하는 “재외동포”의 현실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내법에 근거하여 개입한다는 것은 “재외동포”의 생존권 문제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맡아 “세계 한인의 날” 제정에 앞장섰던 이구홍 선생이 교민청 혹은 동포청의 신설뿐 아니라 “재외동포”의 참정권 부여까지도 반대했던 논리가 이것이다.¹⁸⁾

둘째는 형평성을 둘러싼 국내 정치와의 충돌 문제이다. 현행 “재외동포

정책”의 주요 내용은 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각종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재외동포기본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가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발전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임의조항이지만, 이는 한편으로 “재외동포”의 한국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과 모국 지향성을 자극하고, 다른 한편으로 납세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내국인의 정치적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¹⁹⁾ 이 문제는 단순히 예산 집행의 타당 여부를 넘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유대강화”라는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책 취지와도 충돌한다. 2023년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의료보험 혜택을 둘러싸고 각종 매체를 떠들썩하게 장식한 논란이 그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²⁰⁾ 참고로 재외동포청의 집계한 2023년 기준 “재외동포”의 총수는 708만 1천 명으로, 그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수는 461만 3천 명으로 전체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²¹⁾

Ⅲ.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의 “귀교·교권”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은 제1조에서 “귀교와 교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제시하였고, 그 제2조는 법률의 적용 대상인 “귀교”와 “교권”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제정 당시 전체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던 이 법률은 “귀교·교권”이 가지는 각종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익과 함께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였고, 30개 조항으로 확대 수정된 2000년 개정 법률은 해당 업무의 책임 소재와 권익 침해 발생 시 처리 방법 등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외 1993년과 2004년 각기 공포한 「귀교교권권익보호법 실시판법」은 “귀교·교권”의 신분 인정 및 각종 권익 보장의 구체

18) “재외동포 연구 50년 외길 이구홍 이사장.” 『연합뉴스』 2014.10.10.

19) 외교통상부,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서울: 외교통상부, 2006. pp. 112~113.

20) 전형권,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분석평가와 개선방안: 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4호, 2008. p. 171.

21) 재외동포청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101(검색일: 2025.08.10.)

적 절차, 그리고 책임부서로서 각급 인민정부(人民政府) 및 귀국화교연합회(歸國華僑聯合會)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다.²²⁾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은 그 명칭에서부터 “귀교·교권”이 그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그들이 가진 권익의 법적 보장에만 집중할 뿐, 외국 국적을 취득한 “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에 대한 규정마저 지극히 부차적이다.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이 언급하고 있는 “화교” 관련 내용은 다음에 불과하다: “귀교는 귀국하여 정착한 화교다. 화교는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이다. 교권은 화교 및 귀교의 국내 친척이다(제2조); 국가는 귀국, 정착하려는 화교에게 적절한 장소를 마련해 준다(제4조); 귀교 학생, 귀교의 자녀, 화교의 국내 자녀의 입학 및 취업에 대해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려한다(제11조).” 이는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이 해외의 “화교화인”이 아닌 온전히 국내의 특정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령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이 중국 “화교화인 정책”의 대표 법령이 되었고, 또 이 정책이 어떻게 그토록 큰 경제적 성과를 견인할 수 있었을까?

“귀교”는 “화교화인”의 중국 귀환 및 그 가능성에 대해, 그리고 “교권”은 “화교화인”의 중국 내 혈연관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부여한 법적 신분이다. 이에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은 “귀교·교권”을 매개로 삼아 “화교화인”의 역량을 중국의 발전에 동원하기 위한 법적인 마중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와 함께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의 법률 적용 대상, 즉 “귀교·교권”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법률과 정책의 영역 분리를 통한 외교와의 마찰 차단이다. “외교에 대한 교민 정책의 복종”은 중국공산당 정권이 1950년대 중반부터 줄곧 견지해 온 원칙이다.²³⁾ 중국의 “개혁개방” 및 외교 환경은 이 원칙의 엄격하고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였고, 중국 정부는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22) “中華人民共和國歸僑僑眷權益保護法(1990.09.07.)”, “歸僑僑眷權益保護法實施辦法(1993.07.19.)” 全國人大華僑委員會研究室, 『僑務法律·法規選編』, 北京, 1993, pp. 1~15; “中華人民共和國歸僑僑眷權益保護法(2000.10.31.)”, 全國人大華僑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歸僑僑眷權益保護法講話新編』, 北京: 台海出版社, 2001, pp. 8~12; “歸僑僑眷權益保護法實施辦法(2004.06.23.)” 顏春龍, 『僑務法學新論』, 成都: 四川大學出版社, 2008, pp. 384~388.

23) 施雪琴·王劉波, “華僑歸國觀光團與新中國的僑務外交探析.” 『南洋問題研究』 第3期, 2015, p. 65.

이에 화답하였다. 1980년 제정된 중국의 「국적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국민의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하였고, 「헌법」 또한 1982년 개헌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외교 영역의 각도에서 볼 때, 해당 조항은 외국 국적을 가진 “화인”이 중국의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최고 권위의 법적 규정이었던 바, 1990년 제정된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이 “화인”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위 헌법 및 법률의 취지와 어긋나는 문건이 중국의 교민 정책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로 1984년 국무원 교무판공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法制工作委員會), 화교위원회, 외교부, 사법부, 공안부, 민정부(民政部) 등 동의를 거쳐 각급 관련 부서에 하달한 대외비 문건은 다음과 같은 “화인”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화인”이 귀국해 중국의 국적을 회복하면 “귀교”이다. ② “화인”의 중국 내 친척에 대한 대우는 “교권”과 동등하다. ③ “화교”에 대한 우대 정책은 “화인”에 동등하게 적용한다.²⁴⁾ 이는 중국 정부가 대외비의 형식을 통해 “화인”을 교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이다. 중국의 외교 원칙 및 관련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이 문건은 중국 정부의 교민 정책이 공식 영역과 비공식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정책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국가이익의 실현을 위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법률은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제도를 제공한다. 이에 정책은 포괄성과 유연성을 갖지만, 이와 상관되는 법률은 구체성과 안정성에 유의한다. 중국의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을 통한 “화교화인 정책”의 추진은 이러한 정책과 법률의 상호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화교화인 정책”에 관한 법률 규정은 「귀교교권권익보호법」 외에도, 공익사업, 국적과 법적 신분, 선거, 민·형사 및 소송, 투자, 수출입, 부동산, 기부, 교육, 출입국, 사회보장, 영사조약, 사법해석 등 여러 영역의 법률에 산재해 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적용 대상의 정의 및 범주를 둘러싼 법률 상호 간의 불일치나, 혹은 외교와의 모순을 초래할 위험 요소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관련 법령이 모두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을

24) 廣東省人民政府僑務辦公室, 『僑務工作政策法規選編(1955-1996)』, 廣州(內部資料), 1996, pp. 16~17.

준용하여 그 공식적인 적용 대상을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귀교·교권” 및 중국 국적 소지자인 “화교”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귀교·교권”을 통해 “화교화인”을 중국에 끌어들이기 위한 “화교화인 정책”의 포괄성과 유연성은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의 끝자락인 21번째 조항, 즉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은밀히 내장되어 있다.²⁵⁾ 해당 법령의 조항에 따른 상·하위 조례 혹은 규정의 제정 및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교민 정책에 관한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넘어 지방정부의 하위 규정 집행이라는 선행학습을 통해 “화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법제화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광둥성(廣東省), 선전(深圳)경제특구, 샤먼시(廈門市)를 비롯한 중국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귀교교권권익보호법」에 근거하여 조례, 규정, 시행령 등을 제정하고, 여기에 “화인의 국내 친척에 대한 사업은 본 시행령을 참조해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명시하였다.²⁶⁾ 물론 여기에서도 “화인”은 직접적인 정책 대상이 아닌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친척을 통해 연결되는 간접적인 정책 대상이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정식 문건에 “화인”이 등장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지방정부가 제정한 “화인” 관련 규정이 별다른 문제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 해당 내용은 상위 법령에 반영되었다. 2004년 6월 23일 공개된 「귀교교권권익보호법 실시판법」에 “화교의 신분이 바뀌더라도 그 국내 친척이 법에 따라 인정한 교권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포함된 것이다. 에두른 표현이었지만, 이는 분명 “화인”일지라도 중국 내에 거주하는 그들 친척의 권익과 이익을 보장한다는 의미였다. 해당 시행령이 공개된 지 하루 만인 2004년 6월 24일, 광명일보출판사(光明日報出版社)는 『중화인민공화국 귀교교권권익보호법 실시판법 뜻풀이』란 자료집의 출간을 통해 해당 조항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과거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는 화인의 친척을 교권과 동등하게 대우했지만, 법률과 법규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 법에 근거한 행정의 정신을 구현코자 이 규정을 법률 단계로 상향하여, (...), 정책과 법률·법규의 일치성을 도모했다.”²⁷⁾ 2009년

25) 2000년 개정된 「歸僑僑眷權益保護法」에서 해당 규정은 제29조이다.

26) “廣東省歸僑僑眷權益保護法實施辦法(1992.09.26).” 全國人大華僑委員會研究室, 『僑務法律法規選編』, 北京, 1998, p.15.

에 이르러 위 시행령의 관련 내용은 국무원 교무판공실이 공포한 「화교·외국 국적 화인·귀교·교권 신분에 관한 규정」에 “화인의 중국 내 친척은 교권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으로 다시 반영되었다.²⁸⁾ 이는 “화교화인 정책”의 포괄성과 유연성이 상·하위 관련 법령의 순행을 통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결론: 정명순행(正名順行)

2023년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취지와 방향을 규정한 한국 교민 정책의 대표 법률이지만, 해당 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 및 범주의 확정, 그리고 이와 연쇄되는 정책의 실효성 담보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흥미롭게도 중국 교민 정책의 대표 법률인 「귀교교권권익보호법」에서는 위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90년 법률 제정 이후의 성과에 대한 학계의 평가 또한 매우 긍정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법률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국 양국의 두 법률을 비교하고 그 차이와 함의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중국의 “화교화인 정책”은 모두 교민 정책이 갖는 일반적 조건을 공유하면서도 그 형식 및 운영 기제에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한중 양국 교민 정책의 대표 법령이 설정하고 있는 정책 대상은 그 성격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즉, 아래 <표 1>와 같이 한국의 「재외동포기본법」은 조건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까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에 비해, 중국의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은 명확하게 그 적용 대상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에 제한하고 있다.

27) 丘進主編, 『「中華人民共和國歸僑僑眷權益保護法實施辦法」釋義』,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004, pp. 3, 23. 光明日報出版社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 『光明日報』의 대표 출판사이다.

28) “關於界定華僑外籍華人歸僑僑眷身份的規定” 中華全國歸國華僑聯合會 <http://www.chinaql.org/n1/2019/0322/c420275-30990528.html>(검색일: 2025.06.10).

〈표 1〉 한중 양국 교민 정책의 법률 적용 대상 비교

	적용 대상	적용 대상에 대한 정의와 범주	적용 대상의 법적 지위
「재외동포기본법」	재외 동포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 + 비(非) 대한민국 국민
「귀교교권권익보호법」	귀교 교권	· 귀교: 귀국 정착한 화교이며, 화교는 외국에 정착한 중국 국민. · 교권: 화교 및 귀교의 국내 친척으로서 화교 및 귀교의 배우자,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그리고 화교 및 귀교와 장기적 부양 관계에 있는 사람.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출처: 「재외동포기본법」(2023.11.10.); 「歸僑眷權益保護法」(1990.09.07.)

교민 정책의 법률 적용 대상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한중 양국 교민 정책의 구조적 차이와 함께 중국 교민 정책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은 외향형이고, 중국은 내향형이다. 즉, 한국의 「재외동포기본법」은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동포”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정책 대상은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의 일부인 “귀교·교권”에 제한되어 있다. 이는 중국 교민 정책의 전략적 출발점이다.

둘째, 한국은 통합형이고, 중국은 분리형이다. 즉,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재외동포기본법」은 모두 “재외동포”란 명칭을 통해 정책 대상을 통합 설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화교화인 정책”과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은 정책 대상을 “화교화인”과 “귀교·교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중국 교민 정책의 전략적 구조이다.

셋째, 한국은 직접형이고, 중국은 간접형이다. 즉, 한국의 교민 정책은 「재외동포기본법」을 근거로 삼아 “재외동포”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의 교민 정책은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을 통해 “귀교·교권”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고, 이를 “화교화인”을 유인하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 교민 정책의 전략적 기제이다.

공자는 “정명순행(正名順行)”, 즉 바른 이름이 뜻하는 일의 순조로움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정책 또한 그러할 것이고, 법령의 제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및 「재외동포기본법」에 명시된 “재외동포”라는 이름에는 혈통에 근거하여 해외의 모든 한민족을 아우르겠다는 명명 주체의 막연한 희망이 투영되어 있다. “재외동포”라 호명된 이들이 과연 조국의 희망에 호응할 것인지의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재외동포”를 둘러싼 법적 정의나 범주를 둘러싸고 학계가 던지는 질문이 여전하다는 것은, 적어도 “재외동포”라는 명칭, 혹은 그 명칭의 적용 방식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중국 또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 偉大復興)”이란 정치 구호를 통해 해외의 모든 “화교화인”을 아우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 방식에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 즉, 그 정책 대상을 “화교화인”과 “귀교·교권”으로 구분하고, 정책과 법률의 분리, 정책의 우회적 적용, 상·하위 법률의 순행 등 기제를 통해 이 양자를 연동시키고 있음이다.

한중 양국이 추진해 온 각각의 교민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는 본 연구의 주제가 아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해당 정책이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즉 “한민족”과 “중화민족”의 경계면에 서 있는 중국 “조선족”이나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의 정체성이 한국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에 편향되어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²⁹⁾

무릇 정책이란 해당 국가가 가진 조건에 근거하면서 특정한 목표를 지향한다.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또한 나름의 배경과 특색,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나름의 전략이 있을 터이다. 다만 한국의 교민 정책과 사뭇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던 중국의 교민 정책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이해는 한국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참고로 이어질 수 있다.

29) 다음 논문을 참고했다. 유명기, “민족과 국민사이에서: 한국체류 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제35권 1호, 2002; 여수경, “한국체류 조선족의 갈등과 적응.” 『인문연구』 제48호, 2005.

참고문헌

- 김진영,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과 중국의 화교 정책 비교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서정경, “국가주의와 디아스포라: 중국의 대외 인식과 대응에 따른 화교화인 정책.” 『국제
정치논총』 제57집 4호, 2017.
- 여수경, “한국체류 조선족의 갈등과 적응.” 『인문연구』 제48호, 2005.
- 유명기, “민족과 국민사이에서: 한국체류 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한국문화인
류학』 제35권 1호, 2002.
- 외교통상부,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서울: 외교통상부, 2006.
- 이승우, “재외동포청의 사무와 직제 편성 및 관련 법령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66호, 2024.
- 이용재,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과정과 과제.” 『동아시아의 재외동포정책』 제61호, 2015.
- 이종철, “재외동포정책 비교연구-각국 사례를 중심으로.”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
학술대회(재외동포 패널)』,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8.08)
- 이진영,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한국과 국제정치』 제18
권 4호, 2002.
- 이진영,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Working Paper』, 2010.11.
- 전형권,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분석평가와 개선방안: 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4호, 2008.
- 전호성 외, “재외동포 범주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와 문제점 고찰.” 『재외한인연구』 제66호, 2024.
- “재외동포 연구 50년 외길 이구홍 이사장.” 『연합뉴스』 2014.10.10.
- “재외동포기본법(2023.11.10.).”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0669#0000>(검색일: 2025.06.10).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1999.09.0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7496&ancYd=19990902&ancNo=06015&efYd=1999120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검색일: 2025.06.10).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2001.11.29).”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537&mode=2>(검색일: 2025.06.10).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2004.03.0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4154&ancYd=20040305&ancNo=07173>

- &efYd=200403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검색일: 2025.06.10).
- 재외동포법개정추진위원회,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해』, 서울: 대원문화사, 2002.
- “재외동포재단법(1997.3.2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36180&ancYd=19970327&ancNo=05313&efYd=199704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검색일: 2025.06.10).
- 재외동포청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101(검색일: 2025.08.10.)
- 최승현, “화교화인정책의 전략적 이원성.” 『중국학논총』 제36권, 2012.
- 최영, “한국과 중국의 재외동포정책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세계한민족네트워크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2011.
- 홍화, “한국의 재외동포정책과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의 비교연구.” 인천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자료집』, 서울, 2004.8.
- “‘獨特機遇論’在新時期中國僑務發展戰略中繼承與發揚(2015.03.19).” 國務院僑務辦公室<https://www.gqb.gov.cn/news/2015/0319/35336.shtml>(검색일: 2025.06.10).
- “關於界定華僑外籍華人歸僑僑眷身份的規定.” 中華全國歸國華僑聯合會<http://www.chinaql.org/n1/2019/0322/c420275-30990528.html>(검색일: 2025.06.10).
- 廣東省人民政府僑務辦公室, 『僑務工作政策法規選編(1955-1996)』, 廣州(內部資料), 1996.
- 国务院侨务办公室<https://www.gqb.gov.cn/news/2023/0606/57210.shtml>(검색일: 2025.08.10.)
- 丘進主編, 『「中華人民共和國歸僑僑眷權益保護法實施辦法」釋義』,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004.
- 全國人大華僑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歸僑僑眷權益保護法」講話新編』, 北京: 台海出版社, 2001.
- 全國人大華僑委員會研究室, 『僑務法律法規選編』, 北京, 1998.
- 全國人大華僑委員會研究室, 『僑務法律·法規選編』, 北京, 1993.
- 施雪琴·王劉波, “華僑歸國觀光團與新中國的僑務外交探析.” 『南洋問題研究』第3期, 2015.
- 顏春龍, 『僑務法學新論』, 成都: 四川大學出版社, 2008.
- 嚴瑜, “僑這四十年, 與國共奮進(僑界關注).” 『人民日報(海外版)』2018.12.14.
- 中华全国归国华侨联合会<http://www.chinaql.org/n1/2018/0802/c420286-30203741.html>(검색일: 2025.08.10.)
- 庄国土, “世界华侨华人数量和分布的历史变化.” 『世界歷史』第5期, 2011.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application targets and Implications of “Overseas-Residents’ Policy” in Korea and China - Focusing on the names of the applicable laws specified in Korea’s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재외동포기본법)” and China’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turned Overseas Chinese and Relatives of Overseas Chinese(歸僑僑眷權益保護法)”

Seung Hyun Choi*(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
Yun Jae Jang**(Ph.D. candidate,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Global Diaspora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

The name “재외동포” specified in Korea’s 「재외동포기본법(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reflects the will of the subject of the name to cover all “Koreans overseas” regardless of nationality. Besides the question of whether people named “재외동포” will truly live up to the will of their home country, the debate over the legal definition or category surrounding “재외동포” remains a task that Korea’s “overseas Koreans policy” should address. Of course, the name “華僑華人” which is the subject of the China’s “Overseas-Chinese Policy” reflects the will of a naming subject similar to that of Korea. However, the method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The subject of the law of the 「歸僑僑眷權益保護法(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turned Overseas Chinese and Relatives of Overseas Chines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law of China’s “Overseas-Chinese Policy”, is not “華僑華人”, but “歸僑僑眷(Returned Overseas Chinese and Relatives of Overseas Chinese)” in China with Chinese nationality. The possibility of diplomatic problems surrounding “華僑華人” is fundamentally blocked here. Compared to the direct and comprehensive Korea’s “Overseas Koreans Policy”, China’s “Overseas-Chinese Policy” based on 「歸僑僑眷權益保護法」 is being developed in a double and indirect manner. This understanding of the China’s policy mechanism for “華僑華人” is well worth referencing in Korea’s “Overseas Koreans Policy.”

Keywords: Policy of Overseas residents, Overseas Korean,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Overseas Chines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turned Overseas Chinese and Relatives of Overseas Chinese

투고일: 2025년 7월 6일, 심사일: 2025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5년 8월 20일